

## 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 보험정책국장 이성민[6574] / 보험팀장 백영기[6581] / 팀원 박수연[6587]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6077호

시행일자 2021. 3. 31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
제 목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

-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 :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(2021.3.15.)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(2021.3.17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15393호(2021.3.16.)
-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-15468호(2021.3.17.)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-88호(2021.3.29.)
- 3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「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1-88호, 2021.4.1. 시행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.

- 다음 -

가. 주요 개정내용

<항암요법 개정내역(1)>

- 신설: 5항목 [붙임 참조]
- 변경: 3항목

<항암요법 개정내역(2) 췌장암 1.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>

- 변경: 4항목○ 삭제: 3항목
- 나. 시행일 : 2021. 4. 1. 부터

붙임: 1. 심평원 공고문 1부.

2. 주요 공고개정 내역 1부. 끝.

